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4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김소희·김성원·박준태

이종욱 · 김예지 · 고동진

박덕흠 • 곽규택 • 서범수

주호영 • 우재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 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.

그러나 석유류 정제·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으나,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원자력·화력발전과의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.

이에 석유류 정제·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·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제1항제10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714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제10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석유류시설: 석유류시설에서 정제 · 저장하는 때

자. 천연가스시설: 천연가스시설에서 제조하는 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제1항제10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석유류나 천연가스에 대하여 부과·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납세의무의 성립시기) ①	제34조(납세의무의 성립시기) ①
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	
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	
성립한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지역자원시설세	10
가. ~ 사. (생 략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아. 석유류시설: 석유류시설
	에서 정제·저장하는 때
<u><신 설></u>	자. 천연가스시설: 천연가스
	시설에서 제조하는 때
11.・12. (생 략)	11.・12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